



# 선수등록규정세칙

선수등록 규정은 2004년 2월 19일 대한농구협회가 개정한 등록규정에 따른다. 단,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한국대학농구연맹에 가맹한 단체는 선수등록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실시하되 대학농구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세칙을 정한다.

## 1. 등록규정 제9조에 대하여

(1) 대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등록을 필 한자로 하고 대한농구협회는 학기 총12학기까지 인정하나 대학농구 연맹에서는 8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

단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대학(교육대학.전문대학)의 등록에 있어서도 해당학기에 학생등록을 필 한 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. (2년제 대학은 4학기 등록)

(2)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거나 휴학중인 자는 해당학교 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.

(3) 대학과 전문대학을 혼성하여 단체등록을 할 수 없다.

## 2. 등록규정 제12조에 대하여

(1)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(시·도)이 상이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대학교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.

## 3. 등록규정 제16조에 대하여

(1) 소속단체의 해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타 학교로 이적한 경우에는 전학한 날로부터 선수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교 학기가 시작되는 입학 후 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.

(2)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.

(3) 1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타 단체로 이적하려고 할 때에는 기등록된 단체에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이탈증명서(이적동의서)를 첨부하여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
(4) 국내,국외에서 프로팀에 등록한 자, 또는 국외에서 프로선수의 형태(외국에서 프로선수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한 자)를 가지고 선수로서 등록하여 자격을 부여 받은 자는 본 연맹 선수로서 등록을 할 수 없다.

4. 본 세칙시행에 있어 교육법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